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 3. 5
- 제공자 : 농림부 협동조합과
- 과 장 : 김 종 훈
- 사무관 : 양 주 필
- 전 화 : 500-1698

이 자료는 2004년 3월 6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오늘부터 시행

- 3.5일, 부채경감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

□ 농림부는 3.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오늘 자로 시행되는 부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인들이 2003.12월말까지 대출받아 금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4% 수준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둘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6.5%로 저리대체 해준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과 '00~'01년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의 금리가 3%로 인하된다.

셋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 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넷째, 2000.1.1~2003.12.31일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하여 금리 5%, 5년 상환조건으로 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 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 또한, 농림부가 마련한 부채대책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 지원대상자는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포함)이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및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 다만,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및 대체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②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
-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

□ 아울러,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정책자금, '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부터 일괄 적용되어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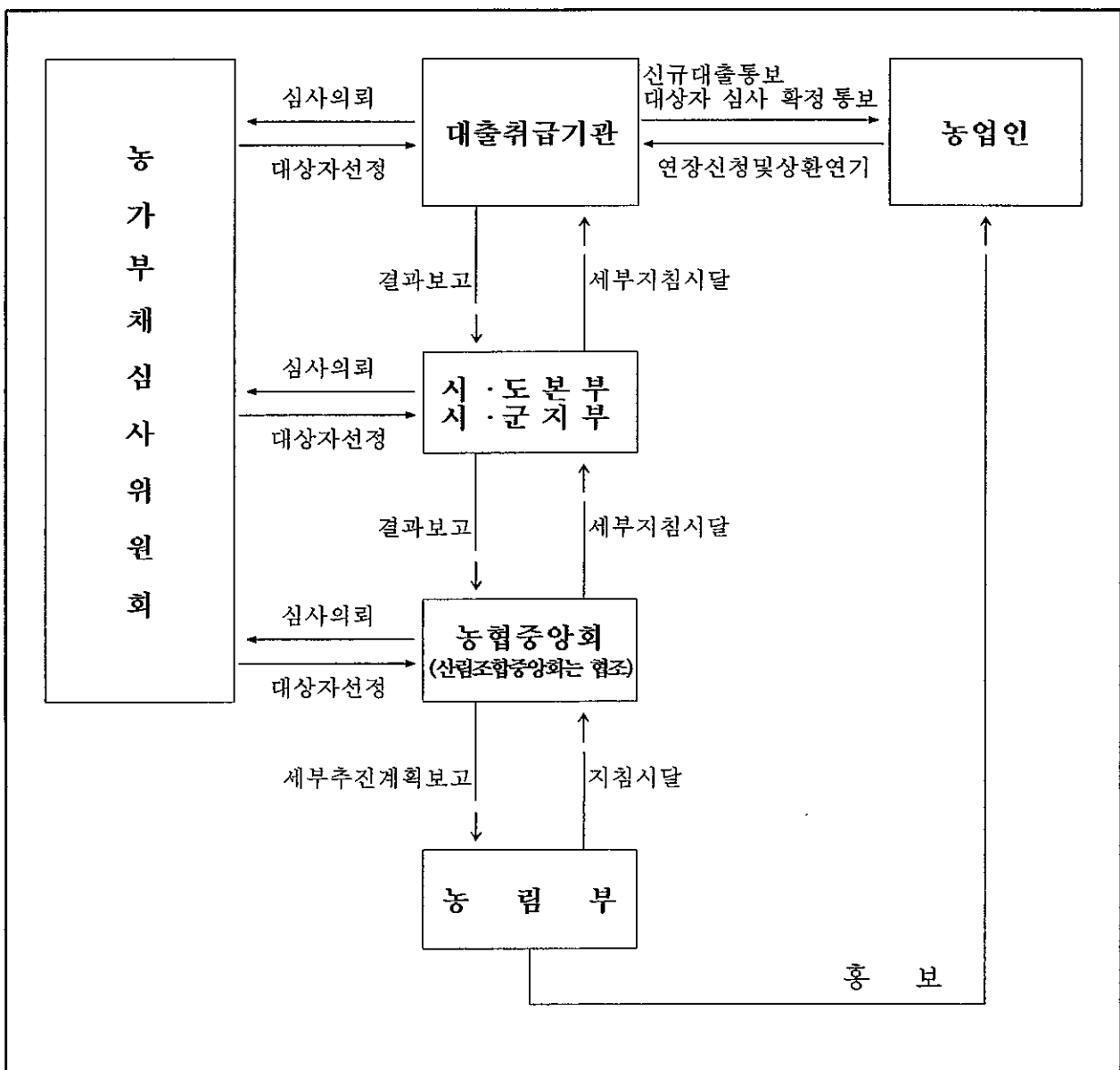
○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04년에 신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별도 구비)하여,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던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오는 5.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과 별도로 농기계구입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 금리를 3.1일부터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원 체계도

농업인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심사 확정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신청시부터 1개월 이내) → 대출실행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04년 추가지원분) 신청에 따른 지원 체계도이며,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2004년 농가부채대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총괄

[문 1] 새로운 부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했는데 추진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 최근 태풍 등 잦은 재해와 DDA출범, FTA 진전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차원에서 부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 2] 개정된 농가부채경감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금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장 하였습니다.
- ② 2001년에 금리 6.5%로 대체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고, 2000년~2003년 사이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중 7조원에 대하여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시 금리를 5%로 인하합니다.

- ③ 2000~2001년간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합니다.
- ④ 2001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⑤ 중장기정책자금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를 환급합니다.
- ⑥ 부채대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약정기일보다 1년이상
앞당겨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할부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의 40%를 환급합니다.
- ⑦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상설화하였습니다.

[문 3] 금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은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 ①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에 대출된 정책
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04년 대책 : 최장 20년 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4% 수준 → 1.5)
- '01년 대책 : 5~10년의 중장기 분할상환 지원
- '98~'00년 대책 : 1~2년 위주의 단기지원, 일시상환 조건

- ② 농가부채를 상환하는 농업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환시 환급하는 이자 비율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정책자금 정상상환농가 우대환급율 : 20% → 40%
 - 부채대책자금 조기상환농가 우대환급율 : 30% → 40%
- ③ 2001년 부채대책시에 지원하였던 자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합니다.
-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3%)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3년거치 7년 상환 → 3년거치 17년 상환)
- ④ 농업용 상호금융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말 사이에 신규 대출되어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전체 7조원의 범위내에서 금리를 5%로 인하하고 5년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⑤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상설화함으로써 부채문제를 수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기준) 시범사업 50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금리 4%
→ (개선) 2,000억원 규모로 상설화, 3년거치 7년상환, 3%

[문 4] 개정된 농가부채경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대상은 법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문 5] 전에는 영농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채대책은 농업인(영농조합, 영농법인, 임업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영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6] 이번 부채대책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책자금, '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금리인하 및 이자 환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만, 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2004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호금융의 금리인하(5년 상환)는 해당 조합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문 7] 일부 지원은 대상자가 한정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우선 이번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농림업을 주업

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04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위에서 말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의시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5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 (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평가
-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하였던 자

- *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내 직계존비속의 금융자산 포함
-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 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 * 개인은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법인은 법인소유차량
-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 소지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문 8] 금번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려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1.5%로 하고, 상환기간은 농업인이 신청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문 9]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장기분할 상환 지원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문7 참조)와

함께 정책자금을 다음과 같이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업종을 변경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 등

[문 10] 저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정책자금 상환연기가 가능한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천5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문 11] 저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내 명의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 놓은게 있는데 정책자금 상환연기가 가능한가요?

- 2003년 7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까지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해당 농업인의 예·적금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문 12]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말하나요?

- 지원대상 중장기 정책자금은 농업인이 농·축·인삼협(또는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로부터 '03.12.31일 이전에 지원받은 농업용 중장기정책자금(대출금) 중에서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입니다. 이중 실제 지원되는 자금은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현재 잔액입니다.
 - 다만, '03.12.31일 이전에 지원대상 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실행이 '04.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금도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

[문 13] 중장기정책자금을 상환연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하여,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중장기정책 자금에 대해 연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신규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 14] 중장기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요?

-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체 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을 지원 하며, 이 경우 대출원금은 물론 연체해소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문 15] 신청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환기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출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축·인삼 또는 산림조합 사무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사무소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동조합이나 시군(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기간은 법공포일(시행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문 16]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지원대상은 대출 원금입니다. 다만, 연체에 의해 연체 해소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체해소시 지원받는 기한내 이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문 17] 제가 현재 보증인 입보 대출이 있는데 이번 장기저리 대출의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보증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나요?

- 기존대출금이 입보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장기저리대출 전환시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문 18]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담보로 농신보보증서를 이용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농신보 보증대상자인 농업인, 단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신청일 및 대출일 현재 연체 및 신용불량거래처의 등록 사실이 없을 것

- ③ 신청일 현재 농신보의 구상채권의 채무자(구상연대보증인 포함)가 아닐 것
- ④ 주택 또는 주사업장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없을 것
- 아울러, 1억원(기존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산, 부채규모 및 대출액 규모에 따라 보증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문 19] 금번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 인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1년도 부채법 시행당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문 20]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1년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법 시행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게 됩니다.

[문 21]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환기간(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04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문 22] '04년중에 상호금융을 추가로 대체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04년중에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이며,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게 되면 금리를 5%로 적용하게 됩니다.

[문 23] 농업용 상호금융은 전부 대체해주나요?

-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우선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 그리고, 전체 지원규모가 7조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는 해당 대출사무소에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당 지원한도는 2003년말 농업용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이내입니다.

[문 24] 그러면 대체해주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 금리는 대체(대출)시에 해당 대출사무소에서 정하는 신규대출금리를 적용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5%로 인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해당 대출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문 25] 금번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0~2001년도에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문 26]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0~2001년도에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법 시행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게 됩니다.

[문 27]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환기간(2년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상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문 28] 금번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1년도에 금리 3%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중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상환기간을 당초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문 29]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은 신청시부터 3년거치 17년 상환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상환기간은 당초 대출일부터 3년거치 17년이므로, 상환기간을 10년간 더 연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 30]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1년도에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입니다.

-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일선 조합 등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이 있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금이 2개 이상의 조합에 있으면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접수기간은 5월31일까지입니다.

정상상환에 대한 이자 환급

[문 31] 부채를 정상상환하면 이자를 환급해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상상환은 중장기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기한내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 정상상환으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금은 금번 부채대책의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중 금번 대책에 의해 신규로 상환연기를 하지 않는 자금입니다.

[문 32] 중장기정책자금이 거치기간 중이어서 이자만 내는 경우도 정상상환에 따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환급은 납부하는 할부원금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므로, 거치기간중으로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문 33] 정상상환시 환급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할 40% 해당 금액을 대출금 이자에서 차감 수납하는 방법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문 34] 당초 상환기일보다 늦게 상환하여도 이자를 환급해 주나요?

- 상환기일 연장없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당초 상환기일보다 늦게 상환한 경우의 연체 이자 등은 별도로 농업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환급

[문 35] 부채를 조기상환하면 이자를 환급해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기상환은 부채대책으로 인해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해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 조기상환으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금은 '01년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04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 '04년 부채대책에 의해 장기분할상환하기 위해 약정하는 중장기정책자금('03년 경영회생자금 포함) 및 '04년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입니다.

[문 36] 이자만 내는 경우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환급은 납부하는 할부원금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므로, 거치기간중으로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문 37] 조기상환시 환급시기와 환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할 40% 해당 금액을 대출금이자에서 차감 수납하는 방법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동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8] 당초 상환기일보다 6개월 일찍 상환하여도 이자를 환급해 주나요?

- 아닙니다. 조기상환은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여야만 환급하게 됩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문 39] 금번 대책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상설화한다는데 농업경영회생지원제란 무엇인가요?

- 재해, 농산물 가격폭락, 가축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40]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04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운용 규모는 2천억으로서,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으로는 경영회생자금과 경영인수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존 대출금의 대환자금과 신규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농협(또는 산림조합)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사전 심사한 후 금액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평가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 41]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또는 5,000만원 이상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입니다.

- 농업인의 지원 신청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회생자금신청의 경우 정상, 회생가능, 부실경영체로 분류하고, 인수자금신청의 경우는 인수가능, 인수불가로 분류하여, 최종판정 결과 회생가능 및 인수가능으로 분류된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합니다.

[문 42]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 자금(부채)은 무엇인가요?

- 우선 회생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할) 농업용 대출원리금(연체대출금 및 연체이자포함)의 대환 자금
 -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 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대 등) 및 일반업체의 사료대금
 - ③ '02년 이후 대위 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④ 시설 또는 품목(가축 포함)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한 금액이내로 하되 기지원 재해복구 자금 및 보험금 수령액 제외)
 - ⑤ 품목(축종)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
- 인수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피인수자 및 인수자의 2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할) 농업용 대출

-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연체이자 포함)의 대환 자금
- ②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인수자의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 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대 등) 및 일반업체의 사료대금
 - ③ 인수자의 '02년 이후 대위 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④ 시설 또는 품목(가축 포함)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사실확인한 금액이내로 하되 기지원된 재해복구자금 및 보험금 수령액 제외)
 - ⑤ 품목(축종)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
 - ⑥ 경영체 인수시 실거래대금의 70%이내 (30%는 인수자 자부담)
 - 실거래대금 : 인수계약시 인수대금에 포함된 피인수자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피경영체 인수대금

[문 43] 지원시 상환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되며, 지원기간중 별도의 의무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금리는 3%입니다.
- 지원기간중에 당초 신청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게 됩니다.